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부의제 폐지〉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75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기형 · 김남근 · 복기왕 · 진성준 · 차규근 · 박홍배
이기현 · 박민규 · 박해철 · 정일영 · 오세희 · 안도걸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8. 22.

3. 회 부 일 : 2024. 8. 23.

※ 의안번호 : 307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시한이 규정되어 있음.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조세법률안의 경우 통상 매년 9월 초 제출되는데, 그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위원회의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

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이라 한다)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되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예산안 등 자동부의 대상에서 세입부수법안을 제외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u>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u>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 ----- <u>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의</u> ----- -----.
② 위원회가 <u>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u>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② 위원회가 <u>예산안등에</u> ----- ----- ----- ----- ----- ----- -----.

현행	개정안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삭 제>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삭 제>

2. 세입부수법안 지정 및 자동부의 절차

현행법 제85조의3은 예산안등과 세입부수법안이 정해진 기한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여 예산안등 및 세입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부수법안이 포함된 이유는 세입은 조세, 부담금 등을 통해 충당되고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¹⁾를 취하고

있어 세입예산안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함께 심의·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입부수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할 경우 세입부수법안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입부수법안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을 지정함.

소관 상임위는 세입부수법안을 11월 30일까지 심사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인 12월 1일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됨.

참고로, 예산안등과 세입부수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헌법 및 법률상 예산안 의결 기한을 고려하여 12월 1일 자정까지만 가능함.²⁾

[그림-1] 세입부수법안 지정 및 처리 절차



*자료: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및 처리 현황」, 『NABO 추계&세제 이슈』 2018년 겨울 통권 제2호, 국회예산정책처, 2018.

- 1)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2)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3. 검토의견

조세 및 부담금 등에 변동은 야기하는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정부는 통상 세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에 제출하고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기한은 11월 30일까지여서,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세 달 남짓에 불과해 심도있는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세입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세 등 세입 관련 법률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 없이 세입 예산안의 심사만으로는 세입의 변경을 야기할 수 없고 예산총계주의³⁾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예산안과 이에 근거하는 법률안 심사를 분리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다음연도 세입규모에 대한 정확한 계상도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 간 총괄적 심사의 필요성,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3)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015